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1. 12.(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개정에 관한 건 (2022-02-00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관련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반경력에 따른 과태료 이중가중 우려 해소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방송법 시행령’과 ‘지침’에서 각각 위반경력에 따른 과태료 가중 규정이 존재하여, 과태료 부과 시 이중으로 가중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직접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방송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기타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해서 지침에서 위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또 협찬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할 때 각각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가중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 내용으로 ‘지침’ 상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경력에 따른 과태료 가중 규정을 ‘시행령’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경력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정비입니다. 현행 ‘지침’에서는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1년 이내 그리고 협찬고지의 경우 3년 이내 방송광고 중 정도위반과 관련해서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2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서 ‘지침’ 상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1/2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6조 제7항을 신설하여 감경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위반정도에 따른 가중·감경 기준 단순화입니다. 현재는 방송광고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 금액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일일광고총량 위반과 일일광고총량 이외 위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굉장히 간격이 촘촘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사례가 없는 일일광고총량 위반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일일광고총량 이외의 위반의 경우에도 실무상 이렇게 까지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위반정도에 따른 가중·감경 구간 기준을 단순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경 기준 추가입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침에서는 위반횟수·정도, 재산상황 등만 사유로 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획득 여부, 위반행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 개선입니다. 현재 지침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액이 동일한 행위들이 있고, 또 위반행위별로 가중·감경도 이루어져 가장 중한 과태료의 기준이 불명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감경이 완료된 조정금액 중 가장 중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부과 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위반행위 종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21년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고지크기 등 경미한 형식규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이 인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고지크기 관련 과태료 금액 신설 등에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동일한 위반행위의 종류를 고지크기 등 경미한 형식규제 위반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번 개정으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의 형식규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들이 보다 명확하고 간소하게 정비됩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엄격한 광고와 협찬고지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모든 규제의 원칙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처

에서 노력해서 이런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지침을 잘 정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처럼 불합리하거나 명확성이 결여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방송광고나 협찬고지 관련 규정 위반은 매월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빈번한 위반행위로 신뢰성 있고 일관적인 행정행위를 위해서는 명료하게 부과처리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부과기준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성도 확보하기를 기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동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관계법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방송관계법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호 방송정책기획과장**

- 방송관계법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등의 보수,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보수와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의 분기별 내역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일자, 대상인원, 집행금액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하여 주시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위원회

의결을 추진하고, 4월 20일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입니까?

○ **장대호 방송정책기획과장**

-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동안에는 국회나 이런 곳의 요구에 의해 선택적으로 공개가 됐었던 것입니까? 그동안에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 **장대호 방송정책기획과장**

- KBS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규정은 없었지만 자율적으로 업추비 등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KBS와 EBS는 수신료라는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며, 방문진 또한 방송문화진흥기금을 바탕으로 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임원 보수 등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송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게 공개 내용 및 방법 등이 적절히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국회에서 우리 사회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 국민들이 요구하던 사항을 국회가 입법했다는데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든 것은 우리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화 또 청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사무처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안건은 관련법 시행의 후속조치로 자료의 공개시기와 방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영방송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접수하는데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라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2분 폐회 】